

# 청운학사 사생 규칙

## 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강원관광대학 청운학사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청운학사의 효율적인 생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규칙은 강원관광대학 청운학사 생활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3 조 (사생증)

- ① 사생은 사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,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관계 직원이 요구할 때는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, 퇴사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사실배정) 사실의 배정은 동일학과 사생으로 배정하며, 배정된 사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사감의 허가없이 배정된 사실을 임의 변경한 자는 퇴사처분 된다.

제 5 조 (외부인 제한) 사생은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사실이나 사내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숙박을 금한다.

제 6 조 (퇴사)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에 퇴사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 원서를 제출하여 사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- ① 휴학, 제적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
- ② 미등록자 및 기숙사 납부금 미납자
- ③ 학칙에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
- ④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결정이 된 자
- ⑤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## 제2장 사내생활

### 제 7 조 (출입)

- ① 현관문은 06:00에 열고 22:30에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폐문 후의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늦은 귀사생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다.
- ③ 외출 시에는 각실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야하며, 배부된 열쇠는 분실 및 도난에 유의하여야 한다.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열쇠 복사비를 변상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.

### 제 8 조 (식사)

- ① 식사시간 : 아침 07:00~08:30, 저녁 17:30~19:00로 정한다. 단, 주말에는 아침 및 점심식사 시간을 11:00~13:00로 한다.
- ② 식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,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예절을 지켜야 한다.
- ③ 사생증은 식사카드를 겸용하므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
### 제 9 조 (점호 및 소등)

- ① 점호는 사감, 사생장, 각 층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생처 교직원 및 총학생회장의 참관을 허용한다.
- ② 점호는 매일 실시하며, 일석점호는 23:00에 실시하고, 주말에는 점호를 실시하지 않는다.
-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호시간에 늦은 사생은 귀사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점호를 불이행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다.
- ④ 점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현관문 출입 및 남·여 사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소등은 24:00로 한다.

### 제 10 조 (금지사항) 사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.

- ①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(단, 소형카세트, 컴퓨터, 절전 스탠드 반입은 허용)
- ② 흡연, 도박, 점호 후 이탈, 음주, 폭행, 절도
- ③ 시설물 비품의 임의 이동, 변명, 손상, 파괴
- ④ 공고물의 무단부착 및 배포
- ⑤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
- ⑥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
### 제3장 면회, 외박, 통신

제 11 조 (면회) 청운학사 내에서 면회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한다.

제 12 조 (외박)

- ① 외박을 희망하는 사생은 사감에게 외박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귀사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(별지양식)
- ② 외박시 허가기간 내에 통고 없이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
- ③ 장기 외박자(단, 5일 이상)는 사생증을 외박 허가원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④ 허가기간을 초과하면서도 재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이 초과하면 퇴사로 간주한다.

제 13 조 (통신)

- ① 사내의 전화교환 시간은 다음과 같다.  
평 일 : 17:00 ~ 22:00, 토요일 : 13:00 ~ 22:00, 공휴일 : 09:00 ~ 22:00
- ② 우편물은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며, 특수 우편물은 사생증을 지참하여 관리실에서 수령한다.

### 제4장 관리, 변상, 보고

제 14 조 (관리) 청운학사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(변상) 청운학사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 (보고 및 건의)

- ① 사생은 사감 및 관계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도난, 상해 기타 사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사생의 의사나 건의사항은 사생회 임원을 통하여 사감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5장 공고, 행사, 집회

### 제 17 조 (공고 및 게시)

- ①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② 사생이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# 제 18 조 (행사 및 집회)

- ① 사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6장 납부금

제 19 조 (납부금) 사생은 관리비, 식비, 자치회비 등의 납부금을 청운학사 등록기간 내에 등록 시 납부해야하며 납입한 납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기숙사 규정 제4장 21조 참조) 단, 질병이나 취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.

- ① 개강 전 기숙사비는 전액 환불한다.
- ② 개강 후 30일 이내 퇴사시 기숙사비 2/3을 환불한다.
- ③ 개강 후 60일 이내 퇴사시 기숙사비 1/3을 환불한다.
- ④ 개강 후 60일 이후 퇴사시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.

## 제7장 사생 자치위원회

제 20 조 (설치) 사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청운학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(이하 “사생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### 제 21 조 (구성 및 임무)

- ① 사생회의 임원은 남·여 사생장, 남·여 각 층장으로 구성하며,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, 그 임기는 한학기로 한다.
- ② 사생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사생장이 그 임기를 대행한다.
- ③ 사생회는 사내 질서유지, 환경정화, 사생복지 향상 등의 청운학사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함을 그 임무로 한다.

## 제8장 사생장 및 층장

### 제 22 조 (사생장의 할 일)

- ① 사감을 보좌하고 사감의 지시 하에 사생생활을 통괄 지휘한다.
- ② 각 층장의 일석 점호 점검사항을 보고 받아 사감에게 보고한다.
- ③ 외출, 외박의 명단을 사감에게 보고한다.
- ④ 각 층장으로부터 층내의 청결정돈 및 이상유무를 보고 파악하여 사감에게 보고한다.
- ⑤ 기타 사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항상 사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.

### 제 23 조 (층장의 할 일)

- ① 각 층의 일석 점호를 점검한다.
- ② 각 층의 인원 및 유동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생장을 통해 사감에게 보고한다.
- ③ 기물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층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.
- ④ 공동 사용장 청소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확인하여 사생장에게 보고한다.
- ⑤ 건의사항을 사생장에게 보고한다.

## 제9장 벌점 제도

제24조 (처벌의 종류) 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감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.

- ① 경고 처분
  1. 벌점이 5점인 경우
  2. 1회 벌칙에 대하여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
- ② 퇴사처분 (벌점10점)
- ③ 사고
  1. 일석점호 불참 및 점호 후 사생이 외부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청운학사 혹은 학교에서 지지 않는다.
- ④ 벌점 기준은 <별지>와 같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장 제19조(납입금) 조항은 2003년에 한해 식비만을 납입항목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장 제19조(납입금) 조항은 2004년에 한해 식비만을 납입항목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양식 제 1호)

# 신입생 청운학사 입사 지원서

지원자 사진 (3×4Cm)	성명				성별	남, 여	
	학과		수험번호		주민번호	-	
	현주소	우) - :					
보호자	전화번호				휴대폰		
	성명		관계		직업		
	주소	우) -					
	주소	전화번호				휴대폰	

- ※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.(입사당일 입사 지원서와 사실 열쇠 수령합니다)
- ※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하 및 미등록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숙사 공동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반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① 납입된 열쇠 보관금(20,000원)은 사생 퇴사일에 반환한다.
- ② 파손된 시설물은 파손시킨 사생이 즉각 관리실 또는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파손된 기물은 해당 사실의 사생이 전원 실비로 일주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사실의 비품(침대, 책상, 매트리스)을 임의로 위치 이동시키지 않으며,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
- ④ 사실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생을 제외한 외부인을 출입시키지 않는다.
- ⑤ 외부 음식물을 절대로 사실 내부로 반입하지 않으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
- ⑥ 지정된 흡연장소를 제외한 구역 내에 담배꽂초 적발 시 해당 사실의 구성원이 처벌됨을 감수한다.
- ⑦ 기타 강원관광대학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 (인)  
보호자 : (인)

강원관광대학 기숙사감 귀하

(별지양식 제 2호)

# 재학생 청운학사 입사 지원서

지원자 사진 (3×4Cm)	성명				성별	남, 여	
	학과		학번		주민번호	-	
	현주소	우) - :					
보호자	전화번호				휴대폰		
	성명		관계		직업		
	주소	우) -					
	주소	전화번호				휴대폰	

※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.(입사당일 입사 지원서와 사실 열쇠 교환합니다)

※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하 및 미등록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숙사 공동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반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① 납입된 열쇠 보관금(20,000원)은 사생 퇴사일에 반환한다.
- ② 파손된 시설물은 파손시킨 사생이 즉각 관리실 또는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파손된 기물은 해당 사실의 사생이 전원 실비로 일주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사실의 비품(침대, 책상, 매트리스)을 임의로 위치 이동시키지 않으며,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
- ④ 사실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생을 제외한 외부인을 출입시키지 않는다.
- ⑤ 외부 음식물을 절대로 사실 내부로 반입하지 않으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
- ⑥ 지정된 흡연장소를 제외한 구역 내에 담배꽂초 적발 시 해당 사실의 구성원이 처벌됨을 감수한다.
- ⑦ 기타 강원관광대학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 (인)

보호자 : (인)

## 강원관광대학 기숙사감 귀하



(별지양식 제 4호)

# 서 약 서

학 과 :  
학 번 :  
학 년 :  
성 명 :

상기 본인은 강원관광대학 청운학사에 입사함에 있어, 기숙사 규정 및 사생 규칙을 준수하며,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약 자 (인)

강원관광대학 기숙사감 귀하

(별지양식 제5호)

# 추천서

학 과 :  
학 번 :  
학 년 :  
성 명 :

상기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, 품행이 방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기에 학년도 학기 강원관광대학 청운학사 입사 신청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자 학과장 (인)

강원관광대학 기숙사감 귀하

(별지양식 제 6호)

# 퇴사원

학 과 :  
학 번 :  
학 년 :  
성 명 :

사 유:

기숙사 시설 / 열쇠 반환확인	근무자: 서명
열쇠 반납금 확인	학생처: 서명

년 월 일

신 청 자 (인)

학 과 장 (인)

강원관광대학 기숙사감 귀하

(별지양식 제 7호)

# 기숙사비 환불 신청서

학 과		학 년	
학 번		성 별	
성 명		은행 명	
예 금 주		계좌번호	
현 주소			
연락처(자택)		핸드 폰	

상기 본인은 강원관광대학 재학생으로서 기숙사비를 완납하였으나 퇴사원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기숙사를 퇴사하게 되어 기숙사비를 환불 받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인)

강원관광대학 기숙사감 귀하

(별지양식 제 8호)

# 별점기준표

내 용	별 점
사내에서 폭력, 폭언, 기타 소란	퇴 사 (10점)
외부인 사내 숙박시킨 행위	
절도행위 등 파렴치한 행위	
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(예 : 사내에서의 과도한 애정행위,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 침입 등)	
사내의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	
고의로 사내 비품 등 시설물에 대해 손상 및 파괴	
기숙사 직원에게 폭언, 폭력 등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	
무단 외박	
본인의 배정된 사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	
점호 후 무단이탈	
사실에서 음주, 흡연, 화투, 카드놀이	
위험물 도입 / 전열기, TV등 사용	
타실의 무단 침입	
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	4점
사실에서 취식(음식배달/컵라면 등)한 행위	
지연 귀가 행위	3점
점호 불이행 행위	
사생장, 층장의 지시를 불이행 하는 행위	
지정된 장소이외의 흡연 행위	2점
사실청소 불이행 행위	
기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	

※ 한달 마감 합산 별점이 10점이나 그 이상이 된 기숙사생은 강제 퇴사 조치됩니다.

※ 점호 불참 및 점호 후 사생이 외부에서 불의의 사고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기숙사나 학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※ 별점 기준표는 당해년도 기숙사 입사일부터 시행합니다.